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강효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5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7. 18.

발의자 : 강효상 · 박명재 · 김현아
김순례 · 추경호 · 이종배
정태옥 · 홍철호 · 박덕흠
김도읍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하는 R&D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일반법인 「과학기술기본법」에 따라 연구비의 환수조치가 가능하지만, 비R&D 사업은 사업비 부정사용의 환수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고시와 훈령을 근거로 하여 사업비를 환수 조치하고 있음.

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하는 사업에서 사업비 횡령, 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사업비 부정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비R&D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 부정사용에 관한 환수의 근거 규정을 둘으로써 사업 수행기관의 부적절한 집행을 억제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.

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기금의 용도) ① ·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6조(기금의 용도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을 사용하는자가 그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.</u> <u>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